

수기작성요령

이직확인서(fax)0508-8230-0207)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주5일(주6일) 근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23-45-67890-0(고용보험 취득시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명칭	00시청	전화번호 031-1234-5678
	소재지	00시(구) 00동 123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피보험자 (이직자)	성명	김고용	(휴대)전화번호 010-1234-4567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	
	주소	00시(구) 00동 456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2020.1.1.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고용보험취득시 가입한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주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른날짜 이직일 다음날=상실일 Ex) 마지막근로일 12/31 이직일=12/31, 상실일 1/1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23
	상실코드랑 동일하게 작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고용보험 상실코드랑 동일한 코드입력 구체적사유에 퇴직사유 작성

②*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월별로 구분)	③*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2021.12.1.~2021.12.31.	27(31)	⑤*임금계산기간	12.1.부터 12.31.까지	11.1.부터 11.30.까지	10.1.부터 10.31.까지	총 합	
2021.11.1.~2021.11.30.	26(30)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31일	30일	31일	92일	
2021.10.1.~2021.10.31.	27(31)	⑦* 임금내역	기본급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6,000,000원
2021.9.1.~2021.9.30.	26(30)		기타 수당	140,000원	140,000원	140,000원	420,000원
2021.8.1.~2021.8.31.	27(31)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원			
2021.7.1.~2021.7.31.	27(31)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원			
2021.6.1.~2021.6.30.	26(30)	⑧ 1일 동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원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무급휴일 제외, 유급휴일만 기재 (ex. 일요일-유급휴일)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되도록 작성(통상 7~8개월)		⑨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원				

평균임금은 세전금액 퇴직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	186(214)일
⑩*1일 소정 근로시간	<input type="checkbox"/> 4시간 이하, <input type="checkbox"/> 5시간, <input type="checkbox"/> 6시간, <input type="checkbox"/> 7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시간 이상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일)
⑫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사유코드: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연장기간

12개월 미만 근로자일경우 상여금 총액*3/근로개월수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자 사업장명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일 2022년 1월 1일 00시
필수->(서명 또는 인)

반드시 사업장 직인 날인 없을 경우 처리불가

월~금 근로자일경우 주5일근무!!! 사업장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무급일 경우 해당하는 월의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입력

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이 아님을 유의) 시급제일 경우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2 참고

자주하는 질문(Q&A)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폐업·도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정년 **취업규칙확인 필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만 60세가 되는날(이직일) 퇴사가 되어야 정년처리가 가능**

(32)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 기준(이직일)**

◆ 기타

(41)고용보험 비적용 (사망)

(42)이중고용

자주하는 질문(Q&A)

기준기간 연장(30일 이상인 경우만 입력가능)

◆ 질병. 부상

사업장의 승인하에 근로를 못한 기간(ex 질병휴직, 휴가, 산재휴업기간)

◆ 사업장휴업

사업장이 휴업상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기간

◆ 임신.출산.육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기타

위 사유가 아닌 기타사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사업장

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위 사유에 해당하지만 30일 미만인경우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입력하는 것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 후 입력

자주하는 질문(Q&A)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1주 2일 이하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둘다 해당하는 근로자만 해당
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24개월동안 이직전 180일이 넘는
달까지 입력

Ex) 주말근로이며 주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경우 피보험단위기
간은 18개월이상 입력필요

자주하는 질문(Q&A)

임금구성내역

기본급	그밖의 수당		
	고정급	그외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
	Ex)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Ex)연장근로 수당, 야간 근로수당, 근속수당	Ex)통근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수당관련문의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축의금 등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경우(업무상 보너스)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

이직확인서 1일소정 근로시간

1. 근로일수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요양보호사 등]

■ 1일소정 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퇴사직전 **28일 총 근로시간(주휴시간포함) / 28일**
- 28일기준: 퇴사직전 28일(9월 30일 퇴사시 9월3일~ 9월 30일)

■ 주휴시간 구하는 공식(7일치)

- **한주 총 근로시간/5(주별로 계산)**
- **주휴시간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주 주별로 계산함**
- 15시간 미만 근로시 주휴는 발생하지 않음

■ 주휴시간 예시

- 각 주별 총근로시간 합계/28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휴시간	총근로시간
1	2	3 (3시간)	4 (4시간)	5 (3시간)	6	7	10/5=2시간	12시간
8 (2시간)	9 (6시간)	10 (4시간)	11 (4시간)	12 (4시간)	13	14	20/5=4시간	24시간
15 (3시간)	16 (3시간)	17 (3시간)	18 (3시간)	19 (3시간)	20	21	15/5=3시간	18시간
22 (3시간)	23 (3시간)	24 (4시간)	25 (5시간)	26 (3시간)	27	28	18/5=3.6	21.6시간
29 (3시간)	30 (3시간)						5/5=1시간	6시간

2. 근로일수가 고정적인 경우

- 1일소정 근로시간 공식: 한주 총 근로시간/ 6